

#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 는 방법 - 안내 책자

#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 안내 책자

## 개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많은 동양인들이 혐오행위와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안내 책자를 통해 혐오 활동 및 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혐오행위는

인종, 국적 및 민족 출신,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성적 지향 등 기타 유사한 요소를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 혐오 행위란?

혐오 행위는 혐오 사건 및 혐오 범죄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혐오 사건: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향한 편견 및 혐오를 언행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상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혐오 범죄: 인종, 국적 및 민족 출신, 언어,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성적 지향 등 기타 유사한 요소를 기반으로 개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혐오 범죄'는 캐나다 형법에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범죄행위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집단학살 옹호 (제318절) 공공장소에서 혐오를 선동하여 공안 방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혐오선동 및 혐오발언) (제319(1)절)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를 의도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제319(2)절)
2.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해당 종교 활동에 필요한 건물 및 재산을 해하는 행위 (제430(4.1)절)

또한, 폭행 (제265절), 협박 (제264(1)절), 소란 및 난동 (제175(1)절), 괴롭힘 (제264(1)절) 등도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로 인한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타 형법사항:

제318(1), 319(2) 관련 혐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319(4-6), 320, 320.1에 따르면 혐오 선전물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18.2(a)(i)에 따르면 해당 범죄가 편견, 차별 또는 혐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 차별 행위

법률상 차별행위란, 고용이나 직장 내에서 처우, 공공장소 및 주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연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행위는 주법(州法)에 위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형법상 범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협박, 범죄 괴롭힘 등과 같은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는 제법죄로 간주됨). 온타리오 인권법 (Ontario Human Rights Code)에 따르면, 차별 행위를 당할 경우 온타리오 인권 재판소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를 통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벌금 형을 포함한 교정 명령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혐오 및 차별 행위를 경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 우선적으로 본인이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및 기타 네트워크에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자기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 (필요할 경우) 의료 지원을 요청하시고, 폭력 및 범죄 사건의 경우 관찮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만약 해당 사건이 혐오 또는 편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이와 관련한 설명을 경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사진 및 비디오와 같은 증거도 수집하십시오. (물론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 목격자일 경우:

-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 자신 또는 관련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또는 소수인종인 사람의 경우 경찰신고를 꺼려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주시십시오.
- 방관자가 아닌 동맹인이 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 피해자에게 관찮은 지 묻거나 그들이 당한 일이 잘못된 일임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혐오와 차별을 당한 당사자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 온라인 혐오표현 (악플 등) 대응방법:

- 해당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회사 지침을 통해 신고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경우 혐오 발언은 커뮤니티 규칙 사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 및 유사한 내용을 목격 시 페이스북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직접 사건을 보고하십시오.
- 차별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보고 및 신고하십시오.

## 직장 및 학교 내 혐오 또는 차별 대응방법:

- 직장의 경우 회사 인사부서에, 학교의 경우 교내 행정담당실에 관련 사건을 신고하십시오.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노조대표를 통해 신고하십시오.
-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인권법률지원센터는 온타리오 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음 기관들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혐오 범죄의 경우 캐나다 반인종차별주의 네트워크 에 신고 가능: <https://stopracism.ca/reportfrm.php>.
- 혐오 사건의 경우 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 가능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및 타갈로그어 지원): 1-587-507-3838. 또한, 중국 캐나다 국가평의회 - 토론토 지부 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차별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아니어도 가능. 단, 한국어 지원 안됨): <https://www.covidracism.ca/>.
- 온타리오 주 전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 및 해결하고자 여러 자문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반인종차별 및 존중 자문 위원회.
  - 거주하시는 지역 내 유사한 조직 정보에 대해서는 지역 사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익명신고를 원할 시 <https://crimestoppers.ca/> 또는 1-800-180-8477 무료 전화를 통해 범죄예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ttps://projectprotech.ca/working-together/staying-connected/> 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 For more information, consult the following community organizations:

- 중국 캐나다 사회정의원 국가평의회: <https://ccncsj.ca/>
  - 토론토 지부: <https://ccnctoronto.ca/>
- 온타리오 법률교육 담당기관: <https://www.cleo.on.ca/en>
- 한인무료법률사무소 Korean Legal Clinic: <https://koreanlegalclinic.ca/> (간략한 법률 조언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및 관련기관 소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회복 및 건강 최선화를 위해 전염병 신속 대응 기관 : <https://projectprotech.ca/>
- 중국계 캐나다인들을 위한 기관: <https://acctfoundation.mn.co/feed>
- 중국 및 동남아시아 법률 클리닉: <https://csalc.ca/>
- 인권 법률 지원 센터: <https://www.hrlsc.on.ca/en/welcome>

